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이현수, 김다현

본 연구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서 본 연구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장애이해교육과 가정교육, 장애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 적응과 폭력 대응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공동생활의 영역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조사가 요구되며, 학교폭력의 동향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관련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폭력 예방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라는 요인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 방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장애학생, 특수아동, 학교폭력

1. 들어가는 말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과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의 보도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수립 및 여러 번의 법 개정, 국가 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것이다. ‘장애’가 대상의 취약성 혹은 폭력 위협에 대한 민감성에 대하여서는 그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져 왔는데,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초점으로 함축될 수 있다.

첫째, 학생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으로서의 장애의 심각성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거나(Kim, 2010), 학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위협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노충래, 2002, 이주희·이양희 2000).

둘째, 장애학생이 폭력의 경험을 한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하고 가중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자아개념 등 정서적 발달 측면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의 발달적 과업의 성취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하나, 폭력을 경험하면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Beirne-Smith, Patton, & Kim, Mansell, Sobsey, & Moskal, 1998, 김유리, 2010).

셋째, 장애학생 폭력은 더 심각한 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시적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영향력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무력감, 주의집중결핍, 대인관계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 및 행동장애가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되어져 왔다. 즉,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인식의 저하 또는 파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 및 불안, 슬픔, 분노 등 내면적 장애와 적개심과 분노 등에 기초한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 등 외현적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구차순, 2007; 김광혁, 2009).

최근의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겠다는 헌법적 요청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생각해볼 때 사회적 무관심 또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장애인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잘 실현되는지를 점검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요인은 장애학생이 가지는 취약성으로 인한 폭력의 위험 가중성, 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한 장애유발 등 폭력의 고위험요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심각한 피해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빈번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 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학생 중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32조에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6조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장애학생들이 빈번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학생 중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 학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 시작점일 것인데 사실 장애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 대상의 수, 연구자의 수,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등 복합적 이유로 이러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실태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유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보다 좀 더 쉽게 학교폭력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Morrison과 Furlong(1994)의 연구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언어적 폭력과 괴롭힘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Flynt와 Morton(2004)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괴롭힘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abuzoka(2003)의 연구결과도 다른 결과와 다르지 않다.¹⁾ 학교 구성원의 수로는 소수이지만 다른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하여 좀 더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이 학교폭력을 통해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경우 그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무시,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있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된 학생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

1) 오원석. 2010.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168 재인용.

해를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찌르기, 목조르기, 꼬집기 및 물품을 이용한 폭력, 예컨대 칼, 형광등, 쇠파이프, 마포자루, 책걸상, 체인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정의한다. 둘째, 금품갈취는 학교폭력의 흔한 형태중 하나로, 보통 구타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범행이 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액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취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금품갈취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욕설 및 모욕은 큰 모멸감을 느끼고, 개인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언어적인 폭력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별명 따위로 불림으로써 피해학생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넷째, 괴롭힘은 말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욕설, 놀리기, 단점 말하기 등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억압감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따돌림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유형 중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사례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들은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을 강제조항으로 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의 장애학생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반 남학생 4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 인천 북부교육청 관내 A초등학교와 장애학생 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열두 살 지적장애 2급 김소라양(가명)이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함께 수시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과 4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한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1학기 초부터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차는가 하면 남학생 2명이 장애친구의 팔을 양쪽에서 각각 잡고 또 다른 남학생은 발로 장애친구의 발을 차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원인 제공자가 장애학생이다. 서툰 말로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 그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소라가 자기통제가 안 된 채 아무 때도 질문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자신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권모(43·여)씨는 아들 A(13·1급 정신장애)군이 당한 일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A군은 쉬는 시간만 되면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아이들은 앉아 있는 A군을 발로 차고 연필로 찔러댔다. 복도를 지날 때는 어깨로 쳐서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일도 있었다. 권씨는 “재작년부터 옆에 누가 오기만 해도 아이가 기겁을 한다”며 한숨을 지었다.

금천구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B(14)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한 일은 정도가 더 심하다. 또래 여학생 4~5명이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담긴 대변을 먹으라고 시켰다. 대변을 먹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B양은 큰 상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전체 학교폭력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학생인 비율이 지난 2009년 1.2%에서 지난해 2010년에 1.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비장애우 학생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을 둔 김모(47·여)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5학년 때 수련회에 간 아들이 변기에 넣었다 뺀 과자 받아먹었던 일이 있었던 것. 김씨는 “아이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아들이 중학교에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을 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반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들은 일반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 비장애 아동이 장애아동의 이해 부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이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례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닥친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학교당국과 관할 교육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3.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1) 학교폭력과 학교폭력법

2003년 6월 23일 현승일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기틀이 세워짐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은 개인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모되게 된다. 학교폭력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권 차원에서 해결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교폭력 사건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행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²⁾은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학생에는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구분이 없다. 즉,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기구와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학생간(혹은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혹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라 인식해야 할 것이다.³⁾ 이러한 인식이 선행될 때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하는 공동의 과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사건의 접근 방식과 문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각급학교에서 같은 기준과 같은 처리절차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제정된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학교폭력법의 제대로 된 정착을 원하는 교과부 및 교육청 등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이 학교폭력법 자체의 당부당에 대한 논의를 떠나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법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고찰해 보고 개선점을 논해본다.

(1)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은 그 단어로 말미암아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어릴 때 한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다. 학교폭력도 ‘학교’라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시행일 2012.4.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3) 비장애학생에게 일어난 학교폭력의 문제와 장애학생에게 일어난 학교폭력의 문제를 똑같은 학교폭력의 피해, 같은 고통으로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같은 학생이며 장애학생에게 발생한 학교폭력이라 하여 이 해결을 특수교사에게만 떠넘긴다던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비장애학생들에게 일어난 학교폭력과 다르게(좀 더 쉽게) 넘어가려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대해서 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이라는 활동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그 동안 학생간에 일어났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성인과 유사 또는 동일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학교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생겨나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학교폭력은 대상을 학생으로 할 뿐이지 ‘범죄’이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해행위가 무엇인지 피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며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인지 및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학교폭력법은 예전의 생활지도의 모습을 탈피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부장교사에게 의존하여 학생들을 선도 및 지도활동을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모든 교사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2)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일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장애학생’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려는 상황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 사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공동의 과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닌 장애학생을 전담하는 특수교사에게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도록 일임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비장애학생을 두둔하거나 장애학생의 피해 진술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⁴⁾ 이러한 학교의 모습이 전체 학교모습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비장애학생의 학교폭력문제보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이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대응에 따라 각 학교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절차로 처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학교폭력법 제정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도 특수교사의 몫이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같이 학교차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형식적 평등의 담보).

특히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지도책임이 특수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자 모두가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해결이 학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교장·교감에 대한 학교폭력의 이해와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속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학교폭력 연수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문제는 학교 구성원, 사건 관계자의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선행된 후 법적 처리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2010.6.28) 자료 인용

(3) 학교폭력법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학교폭력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 방법과 학교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폭력법 자체가 장애학생들을 위한 적극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의 의미

학교폭력법은 2009년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보호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유일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교장은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법의 개정 역사를 보았을 때 2009년이 되어서야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삽입된 것, 2012년 좀 더 큰 폭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제16조의2 하나라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을 장애학생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학교폭력 피해 대상 중 ‘장애학생’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학교에 장애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그리고 교장·교감은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비장애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폭력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규정 신설로 본 장애 학생의 보호 취약

2012년 3월 21일 개정되어 추가된 학교폭력법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으로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호⁶⁾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뿐

- 5)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3.21><시행일 2012.4.1>

[본조신설 2009.5.8]

- 6)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시행일 2012.4.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린 신고·고발 학생들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설·추가된 조항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이라면 비장애학생보다 더 쉽게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학생에게는 좀 더 강도 높은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 앞서 제16조의2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학교 관계자와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근거조항으로 인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끼친 경우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학교와 자치위원회의 성격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비장애학생보다 약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법적 통념으로도 훨씬 더 좋지 않은 학교폭력의 행동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시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앞서 학교폭력법이 학교현장에 적용됨에 있어 학교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법적 미비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내용을 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발생을 전제로 한 사후조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관용하며 평등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단체에서 인권교육, 장애인해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행동양식을 만들어가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으로서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진학
 9. 퇴학처분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직접 재판정을 구성하여 동료 학생을 심리, 변호, 재판한다. 심리 대상은 지각이나 두발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교칙위반을 되풀이하여 누점법정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이다. 대개는 배심원단에서 처벌 내용을 재판부에 권고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칙 적용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다. 나아가 또래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돕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구성원의 전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정 주제를 체험활동 하기 위해 모인 소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하지만 학생자치법정은 지정된 벌점 수준까지 누적된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벌점 누적이 완료되면 집중적인 학생자치법정 심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는 현장만 가지고 본다면 학생자치법정 참여 구성원 학생에게는 집중적인 재판교육과 규칙, 규범에 대한 생생한 체험 시간이 될 수 있다.

사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교칙 위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 자신의 교칙 위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을 함양하도록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의 형식을 따르되 법정에 회부되는 쟁점을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차별, 장애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학교폭력 등을 주제로 하여 법정을 구성해 봄으로써 법정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해보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실제 학생자치법정의 효과를 약 4년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칙위반으로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좀 더 공정한 느낌을 받으며 다른 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교칙위반행동으로 법정에 회부되었던 학생이 다른 친구를 판단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보아 또다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자신의 행동 제어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대화를 통해 폭력 예방 차원에서 부모와 잦은 대화, 폭력은 죄라는 인식, 배려, 인성 및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 향상과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방안, 수업 시수 감축과 수업 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학생지도를 위해 장애이해, 학생관리 방법, 학생과의 유대감 및 배양훈련, 상담, 학교폭력 대응 방안 등의 직무연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사, 비장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에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장애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놀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인성 및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시적인 땀질식의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와 교대, 또 교직 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성 및 인권교육’을 3학점으로 지정하여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에서는 장애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 간의 어울리고 함께 활동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행사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장애학생과 부모, 가족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피해 의식과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과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학교 폭력의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방, 치료, 상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오는 말

장애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일이 발생하고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정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특히나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원인은 개인적·환경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장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의 피해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약해보여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교육적 접근 즉,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이해교육은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타인에 대한 관용, 정의, 평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개발한 학생자치법정의 모델을 수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발생 시 사후적 조치로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학교폭력 사건을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으며 교사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

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법에서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폭력 사건이 법적인 문제가 된 이상 학교에서도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으며 교사 개인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지도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우려와 탄식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한 인간의 삶을 짓밟는 수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을 한 사회에 역할 할 수 있는 인간으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기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교육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적극적 지원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장애이해교육과 가정교육, 장애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 적응과 폭력 대응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공동생활의 영역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직무연수강화, 상담 및 학생 관리와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조사가 부실하다. 지금까지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이에 따라 최근 학교폭력의 동향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넷째, 학교폭력관련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폭력 예방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라는 요인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 방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10.1.1~12.31).

고성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폭력경험과 폭력에 관한 인식차이.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 683-691.
- 김성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27-45.
- 김유리. 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9(3): 71-89.
-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시론적 고찰. *법교육 연구*. 5(1): 69-83.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한빛 문화사.
- 오원석.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167-189.
- 이진국. 200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93-12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 전권배. 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2007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 199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55-68.
- Kim, Y. 2010. Personal Safety Vocabulary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5(2): 312-319.

李炫洙: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실행 모형 개발 연구(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관심분야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 교육 등이다. 주요 논문 및 연구로는 “발화속도와 독화의 상관연구”,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청각장애학교유치부 교육과정 개발방안”,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현황과 개선방안” 외 다수가 있으며, 주요저서는 교육실습의 탐구(양서원),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최신특수학교 교육과정(인포럼), 장애 아동부모교육(성균관대학교 출판부)외 다수가 있다 (mil37@youngdong.ac.kr).

金多賢: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장애아동의 법과 인권 교육 등 이다(lieshoo@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7월 19일

수 정 일: 2012년 08월 08일

게재확정일: 2012년 08월 19일

Improving the Law and Human Right Edu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for Disabled Children

Hyun Soo Lee, Da Hyun Kim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ith a disabilities. Although several studies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children's abuse and developmental problems,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 data related with disabled children abuse and little systematic approaches to protect their rights in Korea. Based on 2010 Abused Children's Status Reports, the status of abused children, follow-up results, and the type of disorders seen by abused children were reviewed. As there are relatively few preventive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current abuse prevention programs were divided into education-oriented programs and treatment-oriented programs to serve as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how to design appropriate abuse prevention programs for disabl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Key words: disabled student, special children, school violence